

#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9
------	-----

제출년월일: 2005. //. 25  
제출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의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 하고자 함(안 제17조)
- 나.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1,000 분의 1.5로 단일화하여 종전 토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세율을 1,000 분의2를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감면조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련공문

- 경상남도 세정과 - 2103호(2005.03.14) 재래시장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 경상남도 세정과-3988호(2005.05.16)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나.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5- 406 호

##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 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으로 하며, 동조제1호 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u></p> <p>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u></p> <p>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u></p> <p>① ( 생 략 )</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u>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u></p>	<p><u>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u></p> <p>① ( 현행과 같음 )</p> <p>② _____ <u>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u></p>

현 행	개 정 안
<p><u>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u>  <u>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u>  <u>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u>  <u>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u>  <u>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u>  <u>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u>  <u>한 주택에 한한다.</u></p>	<p><u>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u>  <u>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u>  <u>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u>  <u>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u>  <u>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u>  <u>한한다.</u></p>